

#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설명자료

대한건설협회

※ 본 자료는 하도급법령, 중기부·공정위에서 배포한 표준 연동·미연동계약서, 가이드북, FAQ 등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자료이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I. 개요

II. 연동여부 판단

III. 연동시 세부절차

IV. 미연동 합의

V. 기타사항

# I. 개 요

## »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 비교

- 납품대금 연동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양 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상생협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하도급법')
납품대금	하도급대금
위탁기업	원사업자
수탁기업	수급사업자
수탁·위탁거래약정	하도급계약
물품 등	목적물 등

# I. 개요

## »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 비교

○ 양 법의 적용대상 거래는 **기업규모, 거래관계, 위탁내용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수위탁거래 (상생협력법)	하도급거래 (하도급법)
<p>◆ 위탁기업의 매출액(규모)에 따른 제한 없음</p> <p>▶ 대·중견기업→중소기업 (○)</p>	<p>◆ 위탁기업의 매출액(규모)에 따른 제한 있음</p> <p>▶ 대·중견기업→중소기업 (○)</p>
<p>▶ 중소기업→중소기업 (○) 등</p>	<p>▶ 중소기업*→중소기업 (○) 등</p> <p>* 1. (매출액) 원사업자 &gt; 수급사업자 2. 일정 매출액 이하 중소기업 제외: - 건설위탁(45억원 미만), 제조위탁(30억원 미만)</p>
<p>◆ 거래관계, 위탁내용에 제한 없음</p> <p>▶ (위탁기업)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 → (위탁내용) 제조,공사,가공,수리,용역(5)</p>	<p>◆ 업에 따른 위탁만 가능</p> <p>▶ 건설위탁 : <b>건설→건설</b></p> <p>▶ 제조위탁 : (제조, 건설 등) → 제조</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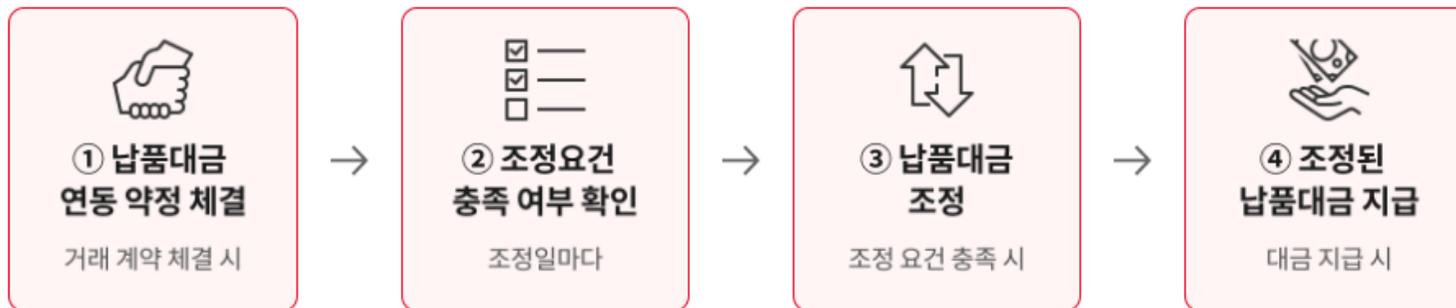
○ 「상생협력법」 이 「하도급법」 보다 포괄적 거래관계에 적용되나 **순수 건설하도급의 경우 「하도급법」 우선 적용됩니다.**



# I. 개요

## » 납품대금 연동이란?

-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증액 또는 감액)**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도급법 제2조제17항)



## » '주요 원재료'란?

-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합니다. (하도급법 제2조제16항)

# I. 개 요

---

## » 납품대금 연동사항 서면기재 및 성실협의를 의무 (하도급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

- (서면기재)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위탁할 때 아래의 연동사항(9가지) 포함하여 서면을 작성,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 때 『표준 연동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① 목적물등의 명칭, ② 주요 원재료, ③ 기준 지표, ④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⑤ 조정요건, ⑥ 조정주기, ⑦ 조정일, ⑧ 조정대금 반영일, ⑨ 연동산식 및 기타 사항
- (성실협의) 작성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에 반하는 불공정한 내용이 되지 아니하도록 수급사업자와 **성실히 협의**하여야 합니다.
- (처벌) 연동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및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하도급법상 **벌점**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 I. 개 요

---

## » 납품대금 연동 예외사유 (하도급법 제3조제4항)

○ 주요 원재료가 있는 하도급거래에 해당하여도 아래 **4가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에 적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원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규모(대,중,소)는 매출액, 자산총액, 독립성 기준 등을 고려하여 구분하므로, 정확한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령, 중기부 FAQ 등을 참고(예, **건설업-평균매출액 80억 이하**)

- 하도급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 하도급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다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함)

# I. 개 요

---

## » 연동사항 관련 탈법행위 금지 (하도급법 제3조제5항)

○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처벌)** 연동 약정을 체결하지 않기 위해 예외조항을 악용하는 경우, **시정명령 및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하도급법상 **벌점**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 3천만원(1차), 4천만원(2차), 5천만원(3차) 이하

- 벌점 : **5.1점**(미연동 합의를 위한 탈법행위, 예-**미연동합의 강요·유도**)  
**3.1점**(그외 유형, 예-**쪼개기 계약\***)

\* 하도급거래기간을 90일 이하 또는 하도급대금을 1억원 이하로 분할하여 계약

# I. 개 요

---

## » 시행일 및 적용례(부칙)

### ○ '23.10.4부터 시행

- 제3조(서면 기재의무): 이 법 시행 이후 체결·갱신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

○ 적용례 조항은 법 시행일 이후 신규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계약은 적용되지만 **변경 계약은 제외**한다는 취지입니다.

- 따라서 공기 연장 등 변경 사실이 법 시행일 이후였더라도 연동 약정을 체결할 의무는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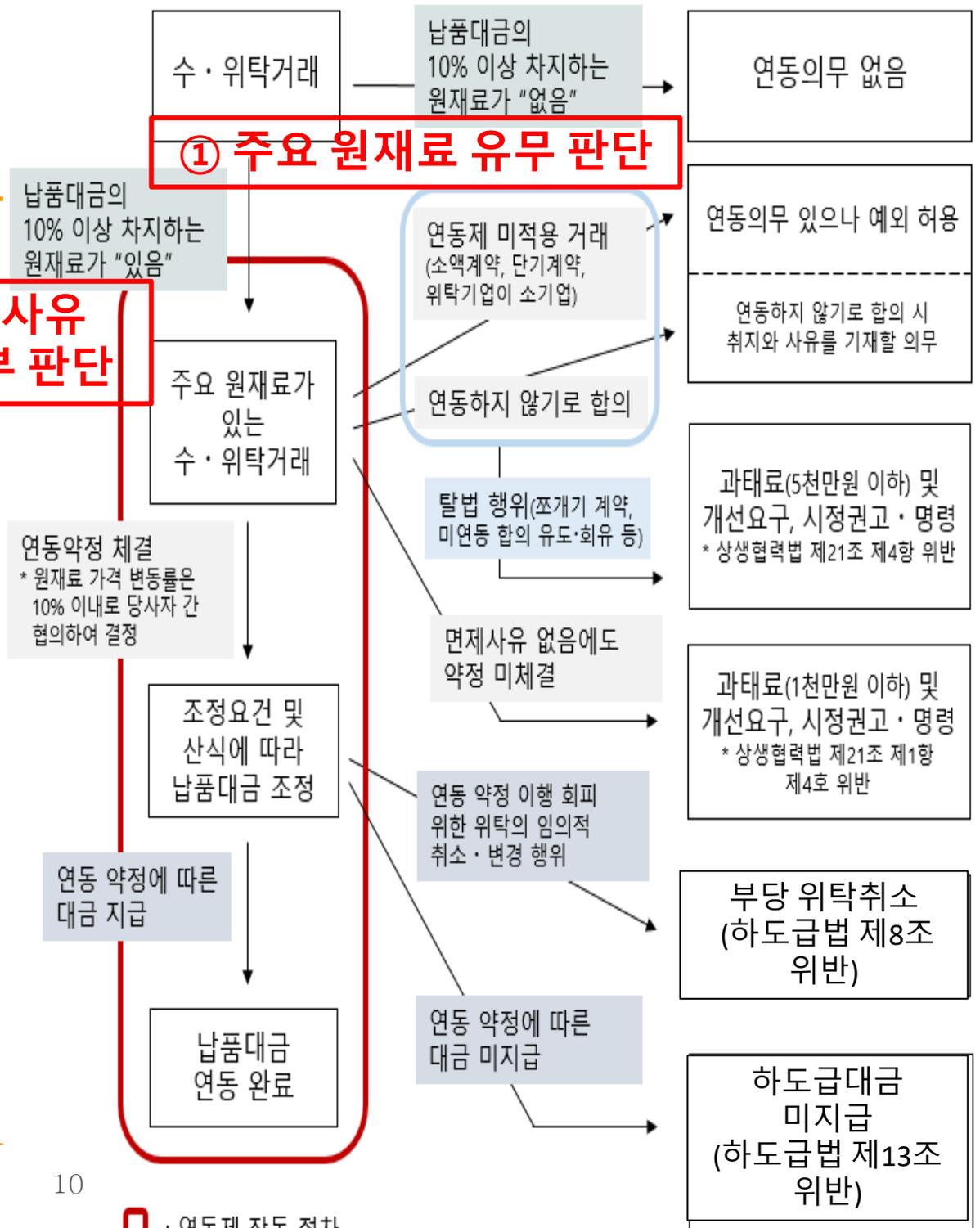
- 다만, 설계가 크게 변경되거나(층수의 변경 등), 위탁의 내용 등 본질적 부분이 변경되어 **기존 계약과의 동일성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는 신규로 체결한 계약에 준해서 **연동 약정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 I. 개요

## » 납품대금 연동제 흐름도

### ② 예외사유 해당 여부 판단

### ① 주요 원재료 유무 판단



   : 연동제 작동 절차

## II. 연동여부 판단

---

### » '원재료'의 정의 및 범위

- 원재료는 물적물등의 제조등을 위해 구매하는 **원료와 재료**를 말합니다
  - 참고로, 원재료라 함은 가공이나 용역이 투입됨으로써 **최종재의 일부**를 이루거나, 생산의 과정에서 그 형태가 변형되어 최종재에 결합하거나 최종재의 구성성분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 그러나, 생산 과정에 사용되기는 하나 물리적·화학적으로 최종 물품등의 구성품을 이루지 아니하거나 **그 자체가 완성된 최종 물품**으로서 독자적 기능을 가지는 물품은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II. 연동여부 판단

---

### » '원재료'의 정의 및 범위

- 원재료에는 **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않음

예)

- 천연재료 : 금, 철, 구리, 알루미늄, 고무, 연, 아연, 주석, 니켈, 석탄, 원유, 원목 등
  - 화합물 :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염화비닐(PVC) 등
  - 천연재료 또는 화합물을 산업용으로 가공한 물건 :  
금속강, 금속판, **골재, 목재, 시멘트, 레미콘, 콘크리트**, 선철, **아스팔트**, 화학섬유, 합성수지 등
  - 제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중간재 :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부품, 기계부품, 석유화학제품, **철강재**, 나사, 강철, 고무 타이어, 전기 센서 및 램프, 시스템반도체, 전동기, 발전기, 변압기, 모듈, 반제품 등
- 원재료는 **재료비에 해당**하며, 노무비(인건비 등), 경비(운반비, 유류비 등)은 연동제의 적용 대상이 아님

## II. 연동여부 판단

---

### » '원재료'의 정의 및 범위

- 원재료에는 수탁기업이 비용을 부담하는 **유상사급자재는 포함**됩니다.
  - 다만, 유상사급에 따른 하도급거래의 경우 구체적인 계약내용, 자재비 결정·부과방식 등을 파악하기 어렵고 유상사급의 경우에도 취지와 거래방식에 따라 다양한 양태가 존재한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다만, 연동제 도입취지를 고려할때, 원재료가 원사업자를 통해 수급사업자에게 유상으로 제공되는 과정에서 **원재료 가격변동분이 수급사업자에게 전가**될 여지가 있다면 하도급대금에 원재료에 대한 비용을 포함시켜 연동시켜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무상사급**과 같이 수급사업자가 원재료 구입을 위한 비용부담이 전혀 없고 이에 따라 원재료 가격변동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라면 **연동관련 의무가 면제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 II. 연동여부 판단

### » '원재료'의 정의 및 범위

#### ○ 관련 공정위 FAQ 답변내용 (품목 vs 규격)

77 품목이 같으나 규격이 다른 원재료를 구매하는 경우 주요 원재료 산정 기준은?

● 동 약정은 개별적인 물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 원재료의 경우 재질이 동일하고 규격만 다른 품목 등과 같이 어느 정도 공통적인 성격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주요 원재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86 품목은 다르나(철판 3mm, 2mm), 동일한 원재료(철)로 구성된 경우, 원재료의 비율은 품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또는 원재료인 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 거래상대방, 거래기간, 주요 원재료 구성 등에 있어서 동일성이 크고 단지 크기, 규격 등 단순 가공 과정상 세분화된 물품 생산의 경우, 하나의 하도급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 ▶ 따라서, 품목은 다르나 단순한 두께 차이이고 성분(원재료)과 제조방법 등이 거의 유사한 물품들에 대해 체결된 하도급계약의 경우, 전체 투입된 원재료 비용이 전체 하도급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연동 의무 존재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85 품목은 다르나(AL창호, AL패널), 동일한 원재료(AL)로 구성된 경우, 원재료의 비율은 품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또는 원재료인 AL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 AL창호와 AL패널은 별개의 원재료 또는 별개의 물품등으로 해석됩니다.

- ▶ 주택 공사를 위탁하고 그 원재료로 AL창호와 AL패널이 들어가는 경우, AL창호와 AL패널 각각의 비용이 주택 공사에 따른 대금 중 10%를 차지하는지에 따라 주요 원재료 여부를 판단합니다.
- 이 경우 AL창호와 AL패널이 원재료이므로 AL창호와 AL패널의 원재료인 AL의 비중을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 ▶ 반면, AL창호 또는 AL패널의 제조를 위탁한 경우 AL창호와 AL패널은 별개의 물품등이므로 각각을 기준으로 AL의 비용이 10%를 넘는지를 판단합니다.

## II. 연동여부 판단

### » '원재료'의 정의 및 범위

#### ○ 관련 공정위 FAQ 답변내용 (기성품)

#### 38 페인트 도장공사에서의 페인트도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 페인트 도장공사를 건설위탁 또는 수리위탁 한 경우 페인트도 원재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41 원재료 범위에 기성품도 포함되는지?

- 원재료는 물품 등의 제조를 위해 구매하는 원료와 재료를 말합니다.
  - ▶ 원재료에는 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제조를 위해 수급사업자가 기성품을 구매하는 경우 기성품은 연동제의 대상인 원재료에 해당합니다.
  - ▶ 예를 들면, 페인트 도장 공사를 위탁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구매하는 기성품인 페인트도 원재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40 시멘트가 원재료인 레미콘일 경우 원재료는 시멘트인지 레미콘인지?

-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급등에 대한 위험을 원-수급사업자가 상생의 관점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분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따라서, 수급사업자가 구매한 원재료가 무엇인지에 따라 사안별로 원재료는 달라집니다.
  - ▶ 시멘트 모래 자갈 등을 구입하여 레미콘으로 제조 후 납품하는 경우라면, 시멘트 모래 자갈 각각이 원재료가 되며, 각 원재료별로 주요 원재료 해당 여부, 예외 사유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 ▶ 한편, 수급사업자가 레미콘을 구매한 후 레미콘으로 물품등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라면, 레미콘이 원재료가 되며 레미콘의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를 차지하는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 II. 연동여부 판단

### » '원재료'의 정의 및 범위

#### ○ 관련 공정위 FAQ 답변내용 (재료비)

아래 공사계약 내역서가 하도급대금 연동 충족 경우 양사간 협의하여 재료비 5% 상승분을 위탁업체 추가 지급 시, ①재료비 추가상승분 (7,994,960\*5%)만 지급하는지? ②재료비 상승분에 의한 간접비(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및 기타경비)도 계상된 금액을 지급하는지?

45

설 치 공 사 비	재료비	7,994,960		
	노무비	6,498,000		
	경비	1,850,000		
	소계	16,342,960		
	고용보험료	65,630	1.01% * 노무비(완제품+설치공사)	모든공사 적용

●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계약체결 시점에서 예상치 못한 원재료의 가격 변동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함께 부담하는 제도로 하도급법 상 연동의 대상은 원재료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간접비가 재료비에 연계하여 계상되는 경우라도 간접비는 연동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할 대상은 아닙니다.

● 다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간접비의 일부 항목이 주요 원재료 가격과 연계되어 계상되어 있는 경우, 약정체결 시 주요 원재료 가격과 연계된 간접비 항목도 함께 연동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53

목적물이 아닌 가설 자재의 경우(예, 가설 교대용 H빔, 비계 및 동바리 등) 연동대상인지?

● "주요 원재료"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를 의미합니다.

▶ 위 비계나 거푸집은 제조에 사용된다고는 할 수 있으나, "재료"란 사전적으로 "물건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것", 즉 물건의 일부를 구성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들과 달리 물품등에 들어가지 않고 단지 사용될 뿐인 것들인 비계나 거푸집 등은 "원재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수급사업자가 원재료의 가격 변동으로 인하여 재정적인 손실을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원재료의 최종적인 비용 부담 주체가 수급사업자가 아닌 원사업자라면, 수급사업자는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라 재정적인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원재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89

재료비 항목이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로 나뉘지는데, 어떠한 항목을 주요 원재료로 판단해야 할까요?

● 직접 재료비\*에 포함된 원재료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 등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라면 주요 원재료로 볼 수 있습니다.

\*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 (주요재료비, 부분품비)

● 간접 재료비\*의 경우 사안별로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예를 들어, 포장 재료비와 같은 경우에는 포장재가 최종 물품의 일부를 구성하는 원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소모 재료비, 소모공구·기구·비품비, 포장재료비, 가설재료비)

## II. 연동여부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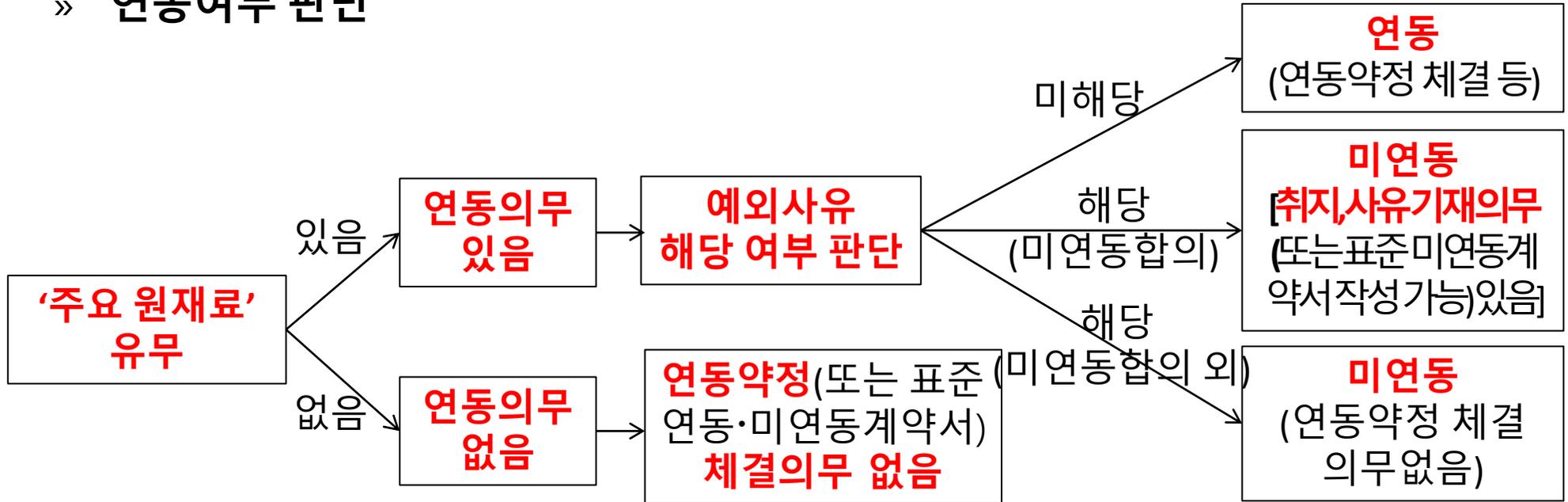
---

### » '주요 원재료'란?

-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합니다. (하도급법 제2조제16항)
- 원재료의 비용이란 계약 체결 시점에 수급사업자가 원재료를 구입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말하며, **부가세가 포함**됩니다.

## II. 연동여부 판단

### » 연동여부 판단



- **수급사업자는** 위탁기업이 원재료의 단위 당 판매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가 내역을 제공**하는 등 원사업자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연동 약정의 체결 및 약정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원가정보 등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부당 경영간섭 금지**(법 제18조 제2항제3호)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II. 연동여부 판단

### » '주요 원재료' 유무 판단

#### ○ 관련 공정위 FAQ 답변내용 (주요 원재료 유무 판단 절차)

**57**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을 위한 약정서의 내용은 양사의 합의가 가장 우선시 되는 요건인지?

- 약정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수급사업자 간의 성실한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 ▶ 다만, 하도급법 제2조제17항에 따르면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수급사업자가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10%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요건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 ▶ 또한 주요 원재료는 하도급법 제2조제16항에 따라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중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합의로 연동 대상 원재료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0** 전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거래가 있는지 문의하여 회신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동제를 적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 주요 원재료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하므로 실제로 주요 원재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가 주요 원재료가 없다고 확인하여 연동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 또한, 법상 연동 의무 이행을 위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필요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원사업자가 관계법령상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법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금지하는 경영상의 정보 요구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Ⅲ.17.마)

인건 내역 현세도의 상주 골공등의 세소에 사용되는 현세도도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라고 되어 있는데 수급사업자가 원재료가 하도급대금에서 차지하는 구체적 비율을 공개하지 않거나 차지하는 비율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주장만 하는 경우, 연동대상 원재료가 없는 것으로 간주 가능한지?

**98**

-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원·수급사업자 간 상호 신뢰 속에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 ▶ 원사업자는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에 필요 최소한의 원가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수급사업자가 연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원가정보조차 제공하지 않거나, 객관성이 부족한 자료를 원사업자에 제공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영업 비밀 침해 등의 사유로 인한 미연동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 ▶ 그러나, 주요 원재료가 존재함에도 존재여부를 알 수 없다는 사유(자료 미제출)로 연동 대상 원재료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 II. 연동여부 판단

### » '주요 원재료' 유무 판단

- 관련 공정위 FAQ 답변내용  
(주요 원재료 유무 판단 절차)

**135** 경쟁입찰에서 최저가로 낙찰된 업체와 연동 조건(원재료 차지 비율, 조정 주기, 기준 지표 등)에 대한 합의 불성립을 사유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는지?

- 최저가 입찰을 통해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주요 원재료 등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에 대해 원사업자는 성실히 협의할 의무가 있습니다.
  - ▶ 우선협상자와 합의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겠지만, 미연동 조건 또는 원사업자가 제시한 연동 조건에 동의하는 차순위 업체와 계약체결을 진행한다고 하면, 연동계약을 체결하지 않기 위해 예외조항을 악용하는 경우(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행위)로 보아 범위반사항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 성실한 협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동에 관한 사항 등 계약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차순위 업체와 협상도 가능합니다.

**192** 원자재 비중에 대한 이견 등으로 하도급대금 연동제 합의 불성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행위가 부당위탁 취소행위인지?

-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란 원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하도급법 제8조).
  - ▶ 원자재 비중에 대한 이견 등 하도급대금 연동제 합의 불성립으로 인해 최종 계약체결까지 이르지 못한 것은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다만,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성실한 협의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II. 연동여부 판단

### » '주요 원재료' 유무 판단

#### ○ 관련 공정위 FAQ 답변내용 (자료 요구 범위)

**104**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원재료가 주로 반제품으로서 표준 고시가격 적용이 어렵고 실제 구매가격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나, 수급사업자가 사전 확보한 재고로 제작을 하면서 중도의 가격 인상을 이유로 연동을 요구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인상된 가격으로 구매한 원재료가 제품 제조에 사용되었다는 증빙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해도 괜찮은지?

- 수급사업자가 실제 구매한 원재료 가격을 사전에 지표로 선정한 경우 산식에 따라 조정을 해야 합니다.
  - ▶ 조정을 안 하게 되면 약정위반 및 대금 미지급 등으로 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 다만 상승가격으로 구매한 원재료가 당사 제품에 사용되었다는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관계법령상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로 하도급법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금지하는 경영상의 정보 요구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하도급 거래공정화지침 Ⅲ.17.마)
  - ▶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상 연동의무 이행을 위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필요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해야 합니다.

**73** 수급사업자가 연동약정 체결 전 원재료를 대규모로 구매하여 재고로 비축해놓고 약정체결 후 원재료 가격이 변동했을 시 재고를 활용하여 물건을 납품 후 변동분을 보전해달라고 할 때,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재고 현황자료를 요구해도 되는 것인지?

- 연동약정 체결 및 이행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 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 ▶ 사례의 경우, 객관적인 공인된 고시가격을 기준지표로 설정했다면 수급사업자가 실제로 구매한 가격이나 재고 보유 여부는 연동약정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아니므로 과도한 경영정보 요구가 될 수 있습니다.

**70** 수급사업자가 주요 원재료 가격을 높게 책정할 우려가 있어 노무비, 경비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지?

-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하도급법 제18조제2항제3호)
  - ▶ 그러나, 연동 약정의 체결 및 약정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원가정보 등을 요구하는 것은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나, 연동 약정과 무관한 노무비, 경비자료까지 요구하는 행위는 필요최소한의 정보를 넘어서서 과도한 요구에 해당되어 하도급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주요 원재료 판단 기준은 공급원가의 10%가 아닌 하도급대금의 10%이므로 재료비 이외의 공급원가 세부 내역을 확인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 II. 연동여부 판단

### » 예외사유 해당여부 판단

○ 주요 원재료가 있는 하도급거래에 해당하여도 아래 4가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에 적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원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하도급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 하도급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연동 예외**  
(연동약정 체결,  
표준 연동·미연동  
계약서 작성  
의무 없음)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 다만, 이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IV. 미연동 합의 참고)

## II. 연동여부 판단

### » 예외사유 해당여부 판단

- 관련 공정위 FAQ 답변내용 (소기업·단기간·소규모거래)

**169** 콘소시움 형태(공동수급업체)로 건설위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일부 수탁기업은 대기업, 일부 수탁기업은 중소기업이라면 연동계약 체결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대기업이 연동계약 체결을 원하지 않아 중소기업까지 미연동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미연동에 대한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있는지?

- 우선 하도급거래인 경우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대기업이 수탁기업인 경우에는 하도급거래가 성립하지 않아 연동제 적용대상 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중소기업이 수탁기업인 경우에는 하도급거래가 성립할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가 성립하고 연동제 적용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동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에 대한 연동의무가 존재하는 이상, 콘소시움 전체와 연동계약을 체결하든 콘소시움 내 중소기업과 연동계약을 체결하든 형식과 상관없이 중소기업에 대한 연동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 다만 콘소시움 내 중소기업 자발적인 의사로 인해 미연동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협의과정 취지 등을 기재한 미연동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143** 최초 90일 이하, 1억원 이하로 계약되었다가,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계약기간 연장 변경계약으로 90일보다 길어지고 대금도 1억원을 초과할 경우 연동약정을 체결해야 하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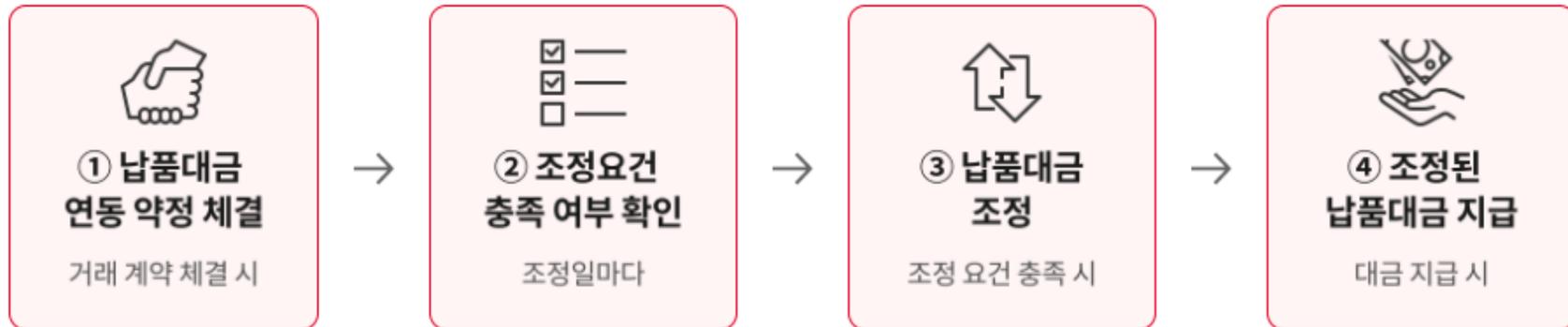
- 기한, 대금 등 목적물 외의 다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과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으로서 최초 하도급거래약정을 체결한 시점의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이 연동 약정 예외의 판단 기준입니다.
- 다만, 위탁의 범위 등 설계 변경에 따른 공기 연장의 경우 기존 계약과의 동일성을 상실할 정도의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에 해당한다면 새로운 계약에 준한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연동적용 대상 여부 검토 후, 주요 원재료 여부에 따라 연동계약 체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57** 프로젝트가 중간 타절로 2억원의 공사가 1억원으로 된 경우, 연동제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 공사 및 프로젝트가 타절 된 경우라면 최초 하도급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한 시점을 기준으로 타절된 시점까지 약정한 내용에 따라 적용하면 됩니다.
  - ▶ 하도급계약 체결 시점에는 연동 약정의 대상이었으므로 중간 타절로 대금이 1억원이 된 경우에도 해당 거래가 연동제 적용 대상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II. 연동시 세부절차

---



## Ⅱ. 연동시 세부절차

### ① 연동사항 작성(계약 체결시)

#### ○ 연동 관련 기재사항(9가지)

구분	내용
목적물등의 명칭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제조, 수리, 건설, 용역을 위탁한 것의 명칭
주요 원재료	목적물등의 제조 등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
기준지표	'주요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지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원재료 가격 변동률의 산정을 위해 기준이 되는 시점 비교시점: 조정주기에 따라 기준시점 이후 원재료 가격의 변동을 확인하는 시점
조정요건	기준지표로 산정한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10% 이내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로 정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을 시행하는 요건
조정주기	조정요건을 감안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주기
조정일	조정 주기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날
조정대금 반영일	목적물 등에 대하여 조정된 하도급대금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
연동 산식	하도급대금 연동에 따라 조정될 하도급대금을 산출하는 산식

## Ⅱ. 연동시 세부절차

---

### ① 연동사항 작성(계약 체결시)

#### ○ 목적물등의 명칭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제조, 수리, 건설, 용역을 위탁한 것의 명칭

#### ○ 주요 원재료

- 하도급법 제2조제16항에 따라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를 말합니다.

## Ⅱ. 연동시 세부절차

---

### ① 연동사항 작성(계약 체결시)

#### ○ 기준지표

- 납품대금 연동 관련 '대상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지표를 기재합니다.
- 기준지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지표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 런던금속거래소, 한국은행, e-나라지표, 조달청,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된 전문가가격조사기관(한국물가정보, 대한건설협회 등)이 고시하는 지표 등

- 이는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앞서 수급사업자의 원재료 구매 비용 증가의 요인이 원재료 시장의 충격 등 수급사업자에 책임이 없는 외부적, 불가항력적 요인에 의한 것임을 양 당사자가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 Ⅱ. 연동시 세부절차

---

### ① 연동사항 작성(계약 체결시)

#### ○ 기준지표

- 다만, **공신력 있는 지표들을 사용하기 부적절한 경우**, 다음과 같이 정할 수도 있습니다.
  - ▶ 원사업자가 **원재료의 판매처와 직접 협상**한 가격 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판매한 가격**
  - ▶ **원재료의 판매처가 수급사업자에게 판매**한 원재료의 단위 당 가격으로서 **원사업자가 확인**할 수 있는 가격
  - ※ **수급사업자는** 위탁기업이 원재료의 단위 당 판매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가 내역을 제공**하는 등 원사업자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 그 밖에 약정서의 **양 당사자가 관련 자료(약정서, 원가내역서, 견적서 등)를 바탕으로 협의**하여 정한 가격

## Ⅱ. 연동시 세부절차

---

### ① 연동사항 작성(계약 체결시)

#### ○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 조정일에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을 기재합니다.

\*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에 따른 **특정 시점의**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

- 원재료의 기준가격의 변동률은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 변동률을 말합니다.

▶ 예컨대, “동”의 기준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이 10,000원/kg이고,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이 12,000원/kg이라면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은

$$\frac{12,000\text{원/kg} - 10,000\text{원/kg}}{10,000\text{원/kg}} * 100 = 20\% \text{입니다.}$$

## Ⅱ. 연동시 세부절차

---

### ① 연동사항 작성(계약 체결시)

#### ○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 원재료 가격변동 시점, 구매시점, 원재료가격 기준지표 고시 주기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간 합의하에 정할 수 있습니다.
- '기준시점'은 대금 변경이 있었던 직전 조정일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으며, '비교시점'은 이번 조정일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예시1
  - ▶ 기준시점 : 대금 변경이 있었던 직전 조정일(대금 변경이 없었던 경우 약정 체결일)의 전월(평균)
  - ▶ 비교시점 : 조정일의 전월(평균)
- 예시2
  - ▶ 기준시점 : 대금 변경이 있었던 직전 조정일(대금 변경이 없었던 경우 약정 체결일)의 전 분기(평균)
  - ▶ 비교시점 : 조정일의 전 분기(평균)

## Ⅱ. 연동시 세부절차

---

### ① 연동사항 작성(계약 체결시)

#### ○ 조정요건

- 조정요건이란 연동을 시행하는 조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의미합니다.
- 조정요건은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지표로 산정한 주요 원재료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이내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로 정합니다.
- 예시
  - ▶ 조정요건 : 3% 이상 또는 -3% 이하/0% 또는 전부 연동
- 조정요건은 원·수급사업자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상승 시와 하락 시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상승과 하락의 요건이 수급사업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부당 감액에 해당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Ⅱ. 연동시 세부절차

---

### ① 연동사항 작성(계약 체결시)

#### ○ 조정주기

- 연동 대상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주기**로 양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조정주기는 일, 주, 월, 분기, 반기, 연 또는 조정요건 충족 시(수시)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 조정주기 : 1개월/분기/수시 또는 조정요건 충족시
- 조정주기는 최소 및 최대 등의 기준이나 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 다만, 계약기간보다 조정주기를 길게 정하는 경우에는 연동 약정이 작동하지 않게 되어 연동제의 취지에 반하므로 하도급대금 연동 약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Ⅱ. 연동시 세부절차

---

### ① 연동사항 작성(계약 체결시)

#### ○ 조정일

- 조정주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날을 기재합니다.
- 조정주기가 1개월이라면 '매월 1일', 조정주기가 분기라면 '매 분기 첫 달 10일'과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 조정일 : 매월 1일/ 매 분기 초일
- 조정주기 중간에 조정요건을 이미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충족일에 대금을 조정할 필요는 없으며 정해진 조정일에 조정요건을 판단하여 조정대금 반영일에 조정된 하도급대금을 반영해주면 됩니다.

## Ⅱ. 연동시 세부절차

---

### ① 연동사항 작성(계약 체결시)

#### ○ 조정대금 반영일

- 목적물 등에 대하여 **조정된 납품대금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기재합니다.
- 예시
  - ▶ 조정대금 반영일 : 매월 1일/배 분기 초일/조정일로부터 7일 이내

#### ○ 연동산식

- 하도급대금 **연동에 따라 변경될 하도급대금을 산출하는 산식**은 원·수급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개별 거래에 맞게 정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예시들이 공정위·중기부에서 배포한 표준 연동계약서 가이드북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Ⅱ. 연동시 세부절차

---

### ① 연동사항 작성(계약 체결시)

#### ○ 반영비율(선택사항)

-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전부 반영하지 않고, 일부만 반영하는 경우 등 반영비율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 반영비율을 원·수급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원재료 가격 변동분의 분담비율을 0(원사업자):100(수급사업자)로 정할 경우에는 연동제의 취지에 반하여 납품대금 연동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동약정서(또는 표준연동계약서)와 부속서류(연동표, 변동표 등)을 3년간 보관해야 함(시행령 6조2항)

## Ⅱ. 연동시 세부절차

### ① 연동사항 작성(계약 체결시)

#### ○ 표준 연동계약서 활용 (본문)

- 기재사항 관련한 최소한의 증빙 자료를 상대방에게 요청 가능하며, **요청받은 상대방은 해당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해야 함(5조)**
- **수급사업자에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지연되어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동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함(6조)**
- 하도급법 또는 상생협력법의 내용 중 **설계변경·물가변동에 따른 대금조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음(7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또는 납품대금(이하 “하도급대금등”이라 한다) 연동과 관련하여 원사업자 또는 위탁기업(이하 “원사업자등”이라 한다)과 수급사업자 또는 수탁기업(이하 “수급사업자등”이라 한다)은 아래 하도급계약 또는 수탁·위탁거래약정(이하 “하도급계약등”이라 한다)에 부수하여 다음과 같이 연동계약을 체결한다.

- ◇ 하도급계약등 명칭 :
- ◇ 하도급계약등의 체결 일자 :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위의 하도급계약등과 관련된 하도급대금등 연동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재료”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수탁·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
2. “주요 원재료”란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등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3.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란 주요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를 말한다.
4. “조정요건”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에 변동한 비율로서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그 변동비율 이상 변동한 경우 하도급대금등을 조정하기로 한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한다.
5. “조정 주기”란 조정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 하도급대금등 연동 여부를 판단하는 주기를 말한다.
6. “조정일”이란 조정 주기에 따라 하도급대금등의 조정 여부를 판단하는 날을 말한다.
7. “조정대금 반영일”이란 목적물등 또는 물품등(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정된 하도급대금등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말한다.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 Ⅱ. 연동시 세부절차

### ① 연동사항 작성(계약 체결시)

#### ○ 표준 연동계약서 활용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 **기타사항**은 위 항목 외 납품대금 연동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납품단가의 **절사 기준** 등)

- 예시

▶ 기타사항 : 납품단가 산출 시 0.01 원 미만 절사

◇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은 하도급거래 또는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하도급대금등 연동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기재사항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3.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4.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비교시점:
5. 조정요건	
6. 조정주기	
7. 조정일	
8. 조정대금 반영일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9.1. 반영비율	
10. 기타 사항	

※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원재료별로 각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한 목적물등에 사용되는 연동 대상 원재료로서 3.~10.까지 중 공통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하나의 연동표로 작성할 수 있음

## II. 연동시 세부절차

### ① 연동사항 작성(계약 체결시)

#### ○ 표준 연동계약서 활용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원재료 별로 각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한 목적물등에 사용되는 연동 대상 원재료로서 3~10.까지 중 **공통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하나의 연동표로 작성할 수 있음**

### < 작성예시 5. >

- ◇ 납품대금 연동 대상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원재료별로 각각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일한 목적물등에 사용되는 연동 대상 원재료로서 3~10.까지 중 공통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하나의 연동표로 작성 가능

####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구분	기재사항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알루미늄 합금(A-001)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알루미늄	동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달청 원자재판매가격 알루미늄(서구산) 최고가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월별 LME 고시가(전기동고시가)
4.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직전 대금 변경이 있었던 조정일 또는 약정 체결일의 전월 초일 비교시점: 조정일의 전월 초일	기준시점: 직전 대금 변경이 있었던 조정일(또는 약정 체결일)의 전월(평균) 비교시점: 조정일의 전월(평균)
5. 조정요건	모든 경우	
6. 조정주기	1개월	2개월
7. 조정일	매월 1일	휴수달 1일
8. 조정대금 반영일	매월 1일	휴수달 1일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조정될 납품단가(단위: 1개) = (비교시점의 알루미늄 기준가격 × 알루미늄 중량(1ton)) + (비교시점의 동 기준가격 × 동 중량(0.1ton)) + 5,000,000원	
9.1. 반영비율	100%	
10. 기타 사항	납품단가는 0.01원 미만 절사	

#### ※ 시뮬레이션

- '23년 1월 1일 계약 체결 후 2월 1일(알루미늄 조정일)이 도래:  
(가정) 알루미늄 기준가격이 '22년 12월 1일(기준시점) 3,000천원/ton에서 '23년 1월 1일(비교시점) 3,300천원/ton으로 상승, 동 기준가격은 약정 체결일의 전월인 '22년 12월(기준시점)의 10,000천원/ton  
→ 조정될 납품단가 : 3,300천원/ton × 1ton + 10,000천원/ton × 0.1ton + 5,000천원 = 9,300천원
- 3월 1일(알루미늄, 동 조정일)이 도래:  
(가정) 알루미늄 기준가격이 '23년 1월 1일(기준시점) 3,300천원/ton에서 '23년 2월 1일(비교시점) 3,000천원/ton으로 하락  
▶ 동 기준가격은 '22년 12월(기준시점) 10,000천원/ton에서 '23년 2월(비교시점) 12,000천원/ton으로 상승  
→ 조정될 납품단가 : 3,000천원/ton × 1ton + 12,000천원/ton × 0.1ton + 5,000천원 = 9,200천원



## II. 연동시 세부절차

---

### ② 조정요건 충족여부 확인(조정일마다)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연동약정에서 정한 조정일마다 연동 대상 원재료 기준가격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을 확인합니다.

### ③ 납품대금 조정(조정요건 충족시)

-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품대금 **연동 산식에 따라 조정될 목적물등의 납품대금을 산출**합니다.
- 원사업자는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물품등의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조정대금 반영일에 조정된 납품대금을 적용합니다.
- 납품대금 변동표 작성(표준 연동계약서 사용한 경우)
  - 「납품대금 변동표」에 조정대금 반영일, 비교시점의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기준가격 및 조정된 납품대금 등을 기재하고 서명(전자서명 포함)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 Ⅱ. 연동시 세부절차

---

### ④ 조정된 납품대금 지급(대금 지급시)

- 원사업자는 표준 연동계약서에 기재된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납품되는 목적물등에 대하여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합니다.

-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조정된 하도급대금 또한 하도급대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 1) 선급금 등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 2) 하도급대금의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또는
- 3) 발주자로부터 잔금 등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며, 법정지급기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법 제6조, 제13조)

- 이때, 수급사업자에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지연되어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②조정요건 충족여부 확인 ~ ④ 조정된 납품대금 지급(표준 연동계약서 제6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II. 연동시 세부절차

### » 연동시 세부절차

#### ○ 관련 공정위 FAQ 답변내용

106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기준지표 관련 협의가 길어질 경우 미협 의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ex. 제작 및 납품 일정이 촉박하여 기준지표를 협의 후 1차 조정주기 전에 계약변경을 통해 적용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 약정서는 위탁에 따른 물품등의 제조의 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등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 다만 원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해·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적어야 한다. 원사업자는 제6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하도급법 제3조 제6항 및 제7항)
  - ▶ 즉, 예외적으로 연동 약정을 체결하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합의에 따라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정하기로 하면서 계약서에 미협 의 내용에 대한 협의 기간을 명시한다면 연동제의 작동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85

수급사업자가 약정서의 내용에 따라 하도급대금 및 단가의 연동을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하도급법상 연동제는 수급사업자의 신청행위가 없더라도 약정상 조정 요건을 충족하면 원사업자는 산식에 따라 그 조정된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 따라서, 대금이 인하되는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합의된 연동 산식에 따라 조정된 대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 II. 연동시 세부절차

### » 연동시 세부절차

- 관련 공정위 FAQ 답변내용 (타 제도와의 관계)

188

하도급대금 연동 의무와 국가계약법상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제도가 모두 병행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

- 국가계약법상 계약금액 조정제도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밖에 계약 내용의 변경"을 조정의 사유로 삼고 있으며 하도급법 연동제 규정의 경우 "주요원재료의 가격변동"을 조정의 사유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법상 연동 의무"가 주요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연동으로 정의 되는 반면 "국가계약법상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전반적인 물가변동요인, 인건비 상승요인 또는 원자재가격 인상 등을 포괄적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두 조정제도의 적용여부는 각 제도별 조정사유에 해당되는지, 조정금액이 어느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살펴서 각 조정제도에 부합하도록 조정여부 및 조정범위를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 ▶ 국가계약법상 대금조정 요인이 연동제와 별개인 경우에는 제도별로 별개의 대금조정이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국가계약법상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하도급법상 연동 의무와 별개로 대금조정이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
  - ▶ 반면 국가계약법상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전반적인 원재료 가격 인상에 따른 것이라면 하도급대금 연동 의무 일부를 이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계약법상 대금조정이 하도급법상 연동 의무 이행범위를 초과하여 이루어진 경우, 추가의 하도급법상 연동 의무 이행이 요구되지 않을 수 있으나 국가계약법상 대금조정이 하도급법상 연동 의무를 하회하는 수준이라고 하면 추가의 연동 의무 이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 II. 연동시 세부절차

### » 연동시 세부절차

- 관련 공정위 FAQ 답변내용 (타 제도와의 관계)

196

발주자-원사업자, 원사업자-수급사업자 모두 연동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여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증액하였다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어떤 금액을 증액하여야 하는지? (대금증액 의무에 따라 산정된 금액인지 아니면 연동특약에 따른 금액인지)

-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증액받은 원사업자의 대금증액 의무에 있어 제1호 "설계변경,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제2호는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 비용이 들 경우"로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 또한 상생협력법 제25조 제1항 제4호는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경제상황 변동 등의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받은 위탁 기업이 같은 이유로 수탁기업에 추가 비용이 드는데도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납품대금을 증액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이처럼 위 두 조항은 원자재가격의 상승이외에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과 같은 다른 대금증액 의무사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원재료 상승을 이유로 "발주자가 대금증액한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대금증액 의무"와 "하도급대금 연동의무"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두 의무별 대금조정 사유와 대금조정 금액을 구체적으로 살핀 후, 조정여부 및 조정범위를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 ▶ 예를 들어, 발주자의 대금증액 요인이 연동제와 별개인 경우에는 제도 별로 별개의 대금조정이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
  - ▶ 반면 발주자의 대금증액 요인이 연동제에 따른 것이라면 하도급대금 연동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예: 포괄증액이 모든 원재료(A,B,C) 상승에 따른 것이라면 주요원재료(A)에 대한 연동제 의무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 만약 발주자의 포괄증액 중 주요원재료에 대한 대금조정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이 하도급법상 연동의무 이행금액을 상회한다면 추가의 하도급법상 연동의무 이행이 요구되지 않을 수 있으나, 발주자의 포괄증액에 따른 대금조정이 하도급법상 연동의무를 하회하는 수준이라고 하면 하도급대금 연동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추가의 대금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 IV. 미연동 합의

---

### » 미연동 합의를 위한 협의

- **회의 개최, 의견 교환 등** 실질적인 협의가 진행되어야 하며, **권한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성실히 협의에 응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 이메일, 공문 등도 같이 보존**하여야 합니다.

### » 미연동 합의 취지 및 사유 기재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연동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와 같이 미연동 합의를 할 경우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취지는 '연동하지 않는다'**이고 **사유는 '연동하지 않는 사유'**입니다.
- 취지와 사유의 **작성방법에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원-수급사업자간 미연동에 대한 진정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지만, **사유까지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 IV. 미연동 합의

---

### » 미연동 합의의 대표적인 사유

○ 미연동 합의 **사유의 사례**들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위해 필요한 **원가 정보를 원사업자에 제공하기를 원치 않음**
- ▶ **원재료 가격 하락이 예상**되어 하도급대금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됨
- ▶ **다른 주요 원재료**에 대해 하도급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하였음  
(복수의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자회사** 관계임
- ▶ **국가계약법 등 다른 법령상 의무**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충분히 조정**하고 있음

- 이 외에도 개별 거래에 따라 다양한 사유가 있을 수 있으며, 합의 시 성실한 협의를 거쳐 기재한 사유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진정한 의사가 잘 드러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 IV. 미연동 합의

---

### » 미연동 합의의 대표적인 사유

- 다만, 원사업자가 성실한 협의를 하였는지 또는 미연동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협의를 경과, 내용,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따라서, 성실한 협의의무 준수 또는 탈법행위 여부 등을 판단할 때 **미연동 합의한 사유 그 자체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 IV. 미연동 합의

### » 표준 미연동계약서 활용

○ 주요내용으로는 ① 필수 기재사항, ②미연동사유 적시, ③미연동계약의 해석, ④금지행위에 대한 내용을 규정

- 필수 기재사항에는 미연동 대상인 목적물 등 또는 물품등의 명칭, 미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명칭, **협의 개요\*** 등

\* **협의한 일시/방법, 계약당사자별 협의책임자 성명/직위**

- 하도급법 또는 상생협력법의 내용 중 **설계변경·물가변동에 따른 대금조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음**

- **탈법행위**시 수급사업자는 연동계약 체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이에 응하여 **연동 관련 의무를 준수**해야 함

### 【붙임 2】

#### 표준 미연동계약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또는 납품대금(이하 “하도급대금등”이라 한다) 연동과 관련하여 원사업자 또는 위탁기업(이하 “원사업자등”이라 한다)과 수급사업자 또는 수탁기업(이하 “수급사업자등”이라 한다)은 아래 하도급계약 또는 수탁·위탁거래약정(이하 “하도급계약등”이라 한다)에 부수하여 다음과 같이 미연동계약을 체결한다.

◇ 하도급계약등 명칭 :

◇ 하도급계약등 체결일자 :

◇ 미연동 대상 목적물등 또는 물품등의 명칭 :

◇ 미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명칭 :

◇ 협의 개요 :

(협의한 일시/방법)

(원사업자등 측 협의책임자 성명/직위)

(수급사업자등 측 협의책임자 성명/직위)

제1조(하도급대금등 미연동 합의)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은 위 하도급계약등의 주요 원재료에 대해 아래의 사유로 하도급대금등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이하 “미연동 합의”라 한다)한다.

미연동 사유	
원사업자등	
수급사업자등	

제2조(해석) 이 계약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제25조(준수사항)제1항제4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 IV. 미연동 합의

### » 미연동 합의

- 관련 공정위 FAQ 답변내용 (합의의 변경, 일부 적용)

**166** 연동제 미연동 합의 후 수급사업자가 연동제 체결 요청을 할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지?

- 계약 유효기간 동안은 미연동 유지 가능하며, 합의하에 계약 조건 변경은 가능합니다.
  - ▶ 다만, 미연동 합의가 원사업자의 탈법행위에 의한 것이라면 원사업자는 연동 협의에 임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168** 초기 도입 시, 공급업체와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체결하였으나 중도에 수급 사업자의 의지로 하도급대금연동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상호 협의된 시점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제 미적용이 가능한가요?

- 연동 약정도 약정의 하나이고,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에 의해 특정 시점 이후 연동하지 않기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 다만, 미연동의 경우 그 취지와 사유를 적을 의무가 있으므로, 특정 시점 이후에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적어야 합니다.

**65** 장기계약에서 계약기간 3년 중 연동제는 1년간만 적용하고 다시 연동제를 협의하는 형태와 같이 계약기간과 연동제 기간을 다르게 합의하는 것이 가능한지?

- 연동약정은 계약기간 동안 유효해야 합니다. 1년만 연동제를 적용할 경우 나머지 2년에 대해서는 미연동 합의가 필요합니다.

# V. 기타사항

## » 입찰

### ○ 관련 공정위 FAQ 답변내용

**176** 현장설명회 시 당사에서 연동조건, 산식등을 제시하고 업체의 동의를 얻어 확정 후 계약 체결시 해당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 현장 설명회 등을 통하여 (예정)수급사업자와 성실히 협의하였다면 이를 통해 확정된 내용으로 수급사업자와 연동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다만, 연동 조건을 미리 제시하고 동의를 얻는 과정이 사실상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는 것이거나 수급사업자의 이익에 반하는 불공정한 내용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면 위법사항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72** 입찰과정에서 연동약정 협의를 위해 원가정보 등 경영상 정보를 요구하여 제공 받았으나, 연동 약정을 결국 체결하지 않은 경우 법률상 문제는 없는지?

- 연동약정에 대한 사전 협의를 위한 목적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필요 최소한의 경영상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36** 입찰 시 수급사업자가 투찰금액과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연동표 기재사항을 제출하도록 하고, 원사업자가 이를 기반으로 연동 합의를 하는 것이 법 위반인지?

- 수급사업자가 연동표 기재사항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를 기반으로 연동 합의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 하도급법 제3조제3항은 원사업자가 약정서에 제3조제2항제3호(하도급 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에 따른 사항 기재 시 수급사업자와 성실히 협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 사안의 경우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약정서에 적는다면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입찰 시 수급사업자가 투찰금액과 함께 연동표 기재사항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는 것이거나 수급사업자의 이익에 반하는 불공정한 내용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면 위법사항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또한, 수급사업자의 미연동 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연동 합의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미연동 하는 취지 및 사유를 약정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V. 기타사항

## » 입찰

### ○ 관련 공정위 FAQ 답변내용

**139** 일부 협력사 풀을 정하고 해당 풀내에서 입찰을 진행하는 경우, 사전에 협력사 풀과 미 연동하기로 협의하고, 해당내용으로 입찰공고를 한다면 추가 협의 없이 미연동 합의를 작성해도 되는지?

- 사전에 협력사 풀과의 협의에서 미연동 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연동 합의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미연동 하는 취지 및 사유를 약정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 또한, 사전에 협력사 풀과 미연동하기로 협의하고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입찰 공고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이익에 반하는 불공정한 내용이 되도록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위법 사항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입찰공지시 참여사에게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원할 경우 일정기간 내에 주요 원재료 금액 내역 등을 제출토록 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미제출시 연동제 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공지문 예시]

**140** 당사는 '23. 10. 4. 부로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제도의 대상은 전체 가격의 10%이상인 원재료(중간재 포함)이므로,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원하시는 공급사들은 반드시 원재료 금액 내역을 낙찰자 통지 후 10일 이내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한 내 미제출한 낙찰사의 경우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기반한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토록 하겠습니다.

- 수급사업자가 연동제 적용을 원하는 경우 주요 원재료 금액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동 합의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다만, 일정 기간을 제시하고 그 기간동안 원재료 금액 내역을 제출하지 않으면 연동 약정 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성실한 협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 ▶ 연동계약체결여부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한 이후, 연동을 원하는 경우, 성실한 협의를 진행하여 연동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미연동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그 취지와 사유를 적시한 미연동 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V. 기타사항

## » 단가계약, 장기계속계약 등

### ○ 관련 공정위 FAQ 답변내용

원재료의 단가를 결정하는 계약을 유효기간 1년으로 체결하면서(연단가계약)  
**94** 물량이 확정되지 않아 예상 물량만 가능하다면, 1건의 계약 당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라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 연단가 계약상 단가만 기재하고 물량이 확정되지 않아 하도급대금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납품하는 물품의 단가와 원재료 단가를 비교하는 방식을 활용하면 주요 원재료의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 연단가 계약으로 인해 확정 물량이 없더라도 소액계약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는 기존 거래관행이나 수요 예보를 통해 총액을 추산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연단가 계약으로 인해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법적분쟁에 따른 책임은 원사업자에 있습니다.

기본거래계약을 체결한 이후 하도급대금은 추후 발주 내용에 따라 사후에 정해지며, 장기계속계약이기 때문에 하도급대금도 정함이 없이 누적되는 구조인 경우 하도급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가 무엇인지 기본거래계약 체결 시점에 확정할 수 없고, 확정한다고 해도 추후 발주품목이 무엇인지에 따라 '10% 이상 차지하는 원재료'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 경우 적용대상을 어떻게 확정해야 할지?

● 기본 거래계약에는 물품의 명칭, 단가, 물량 등 구체적 거래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발주시 개별계약을 통해서 거래조건이 특정되는 경우에는 개별계약 체결시에 연동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의도적으로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쪼개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수량 등을 발주서로 정하는 경우에 계약서에 처음부터 하도급대금이 명시되지 않아도 기존 거래관행이나 수요 예보를 통해 총액을 추산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기본거래계약을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